

예 산 총 칙

제1조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 예산총액 | 일시차입 한도액 |
|--|---|--|
| 계 | 789,127,039 | 26,445,806 |
| 일반회계 | 677,545,564 | 20,326,367 |
| 특별회계 | 111,581,475 | 6,119,439 |
| 기타특별회계 | 24,640,731 | 739,222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사업특별회계 • 교통사업특별회계 •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• 기반시설특별회계 | 792,071 19,350,320 4,153,526 344,814 | 23,762 580,510 124,606 10,344 |
| 공기업특별회계 | 86,940,744 | 5,380,217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 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 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30,492,579 48,848,165 7,600,000 | 914,777 1,465,440 3,000,000 |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867,59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